

學生에게도 無料出願 대리 支援

大韓辨理士會, 5월 1일부터 實施

大韓辨理士會는 지난 4월 21일 徐大錫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상임위원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자 發明·考案에 대한 변리사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發明·考案에 대해서만 회원으로 하여금 무료로 出願代理業務를 취급해 주던 것을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學生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大韓辨理士會가 5월 1부터 실시하기로 한 이 개정규정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의 發明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 학생이 직접 出願인이 되어야 하며, 이들 학생이 發明·考案하여 大韓辨理士會에 무료수임업무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외에도 재학증명서 및 본인의 發明·考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장 또는 學長의 확인서 2통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大韓辨理士會는 지금 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의 發明·考案의 出願代理를 지원해준 회원에게는 전당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학생의 特許出願의 경우 1건당 6만원, 實用新案出願은 1건당 5만원, 意匠出願은

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규정명칭도 「생활보호 대상자 및 학생의 發明·考案에 대한 辨理士業務 취급규정」으로 바꾸었고, 무료수임 辨理士는 수임사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수임사건의 신속과 성실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特許廳은 이미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15일 「特許料·登録

料와 手數料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국민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發明·考案을 하여 出願하는 경우 그 出願에 대한 出願料, 審查請求料, 出願公告料와 최초 3년분의 特許料·實用新案登録料·意匠登録料 또 는 類似意匠登録料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工所權, 대부분 登錄前 實施

特許廳 實施率 調查에서 밝혀져

特許權 등 工所權의 出願時期에 대한 기업체 및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부족해 권리에 대한 法的인 保護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特許廳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시중인 特許權 등 工所權의 66.4%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 登錄前에 권리 를 실시하고 있으며, 登錄後의 실시는 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7년말 產技協이 조사한 자료는 이보다 높은 33.5%가 出願前에, 50.3%가 出願後 登錄前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0%이상이 登錄前에

工所權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審查處理소요 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이 있으나 기업체 및 일반인의 工業所有權保護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이번 特許廳의 등록권리에 대한 실시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권리 존속기간 내에 있는 권리중 特許權은 49.1%가 현재 실시중이며 實用新案은 58.6% 意匠權은 56.3%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工所權의 실시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略>